

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이인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11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2. 13.

발의자 : 이인선 · 이종욱 · 고동진

최은석 · 정성국 · 조경태

조지연 · 성일종 · 정동만

김태호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창업자의 사업 초기 자본 확보를 지원하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자에 대한 출자 시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음.

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창업 초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.

이에 창업 활성화와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14조).

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7항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